

고용·임금확인서							
피고용자	성명			생년월일			
	주소						
	고용성격 (피고용자하는일 구체적으로 기재)						
고용기간		년	월	일부터	년	월	일까지
근로시간		일시간 오전 : ~ : (시간) 일시간 오후 : ~ : (시간) 주당 근로일수 : 일 주 근로시간 : 총 시간					
임금지급형태		일당제	1일임금: 원				
			월평균 고용일수: 일				
		월급제		월분	월분	월분	
			기본급				
			각종수당				
			기타금액 (여비, 자동차유지비 등)				
	합계금액						
국민건강보험 가입여부		☐ 가입 ☐ 미가입					
상기와 같이 피고용인이 본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음을 확인합니다.							
년 월 일							
사업장명 :							
사업장주소 :							
사업자등록번호: 전화번호:							
(영업허가번호)							
사업주명 : (서명 또는 날인)							
※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49조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거나 또는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, 1000만원이하의 벌금·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.							